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

의안
번호

124

제안년월일 : '96. 5.

제 안 자 : 이민희의원외

8인

1. 주 문

- 그린벨트 지역내 행위제한 완화
- 그린벨트 기존대지 및 부락은 녹지와 구분하여 개발허용
- 녹지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중복지정 해제

2. 제안이유

- 그린벨트 지역의 낙후 및 재산권 제한
- 개발제한 구역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재산손실
-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불편

3. 참고사항

- 없음.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

평소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별한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대통령께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도민과 더불어 심심한
국무총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조정과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뜻을 같이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난 1993년 9월 27일 발표한 바 있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그린벨트 지역내의 주민들은 사전에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누누히 밝힌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는 이를 재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발표와 더불어 오히려 현지 주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였고
공청회등을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건설교통부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강변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는 그간 공청회등에서 집중적이고 공정한 토론을 통해 결집된 가장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주장은 거의 무시하고 더이상의 공개토론은 기피하면서도 기본적인 생존권의 침해를 견디다 못한 그린벨트지역내 일부 주민들의 응급조치식의 주문을 전체 주민의 의견인 것처럼 확대하여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획기적 개선방안인 양 일방적인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토지 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등의 현실성이 없는 법규정은 그대로 방치한 채,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타부처의 협조를 요청하는등 형식적으로 주민들의 감정을 무마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관련 타부처에까지 협조를 구하면서도 당해 소관의 부적합한 법규정을 그대로 방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적 소명인 개혁을 완강히 거부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설교통부에게 더이상 우리의 기본적 생존권을 맡길수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993년 9월 27일 발표된 개발제한 구역 개선방안을 철회하고 그린벨트 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조정하여 주실것을 대 통 령께 직접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첫째, 구역내 임야는 그린벨트 여부에 불구하고 보다 더 엄격히 보존되도록

해주시고

둘째, 전체 그린벨트의 2.1%에 불과한 구역내의 기존대지나 부락은 주거지역 수준
으로 개발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세째, 용도지역이 일반녹지지역과 그린벨트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 농경지, 잡종지
(전체 그린벨트의 25.6%)등 비녹지는 구역지정을 해제하여 일반녹지지역으로
단일 지정하여 주시고,

네째, 일백년 전에 취락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 현재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므로 도시형태의 수준으로 가꿀수 있도록 기존마을 부근이라도 구역을 재조
정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국정운영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대 통령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건의는 개방화, 민주화 시대에 일부주민들만의 부당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모두가 신한국 창조의 대열에 동참토록 하자는 충정어린 뜻에서 올리오니 건의한
내용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워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6.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